

영등포구의회
제135회 임시회

『2008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4. 1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2008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안 건 명

- 2008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3. 20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추경예산(안)

● 예산규모 _____ 당초예산대비 0.3% 증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액	증(△)감	비 고
합 계	303,822	302,882	940	0.3%
일반회계	257,772	256,832	940	0.4%
특별회계	46,050	46,050	0	
의료급여	308	308	0	
주민소득	1,375	1,375	0	
주 차 장	43,043	43,043	0	
기반시설	1,324	1,324	0	

● 추경재원(특별교부세)

● 재정인센티브 _____ 440백만원

-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----- 180
-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----- 200
-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----- 60

● 특별지원금 _____ 500백만원

- 재해예방 특별지원(펌프장 개수) ----- 500

● 주요내역	940백만원
● 행정위원회 소관	12건 240백만원
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	16건 700백만원
▪ 행정혁신 역점사업 등 업그레이드	180백만원
- 행정업무포탈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	162
○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	80
○ 보건소 고객 대기실 냉·난방기 설치 등	32
○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	50
- 혁신부서(유공자) 인센티브 등	18
▪ 민원행정 서비스 및 환경개선 등	60백만원
- 민원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등	54
○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실 창구증설 및 대기실 확장 등	42
○ 여권민원실 집기구입 등	12
- 민원행정처리 직원 워크숍	6

■ 검토의견

- 우리 행정위원회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·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건에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.
-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
 - 창의혁신담당관은 - 3건(사업)에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내용은
 -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 등 (8천만원)
 - 책자 인쇄 및 강사료 등 (2백2십만원)
 - 창의혁신 홍보업무추진 (8십만원)

- **감사담당관은** - 1건(사업)에
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내용은
 - 청렴항기시스템구축운영 (5천만원)이 편성되어 있으며,
- **행정지원과는** - 1건(사업)에
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, 내용은
 - 혁신도시 우수사례 탐방 (1천5백만원)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- **민원여권과는** - 9건(사업)에
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, 내용은
 - 민원행정 품질향상 교육 (2백만원)
 - 민원행정 품질향상 업무추진 (4백만원)
 - 민원 대기실 화분 비치 (3백9십6만원정)
 - 민원실 접수창구 증설 및 대기실 확장 (4천2백만원)
 - 여권 분류작업 책상 구입 (1백2십5만원)
 - 민원상담 세트(탁자, 의자) 구입 (2백만원)
 - 전자달력 시계 구입 (3십만원)
 - 호적부 양식 보관 캐비닛 구입 (2백만원)
 - 민원편의시설(책상, 의자 등) 구입 (2백4십9만원)
- **보건위생과는** - 3건(사업)에
3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, 내용은
 - 정신보건센터 고객 상담실 설치 (1천3백만원)
 - 응급환자용 제세동기 구매 (5백만원)
 - 고객 대기실 천정형 냉·난방기 구매 (1천4백만원)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
-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 혁신, 주민생활서비스,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·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,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인 바,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4. 1.

보고자: 김 병 옥